

소송 등의 판결.결정(3심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 청구의 소
2. 원고.신청인	주식회사 케이프,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
3. 판결.결정내용	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2. 원고 주식회사 케이프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케이프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케이프가,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, 원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부담한다.
4. 판결.결정사유	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없음.
5. 관할법원	대법원
6. 판결.결정일자	2021년 10월 14일
7. 확인일자	2021년 10월 14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